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서 등 문서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화 하는 한편,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문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5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3.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정서 원본”을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란 제1호 중 “지정서”를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의3제5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제4조(「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원본”을 “원본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

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으로 한다.

제6조(「선박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본”을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인 제출 서류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선박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제7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발급인 경우>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협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재발급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제1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제9조(「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류·등급·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바. 자격의 유효기간 사.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아.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자.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1부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6.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1부
-------------	--

제1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첨단바

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폐업·휴업만 해당합니다)”를 “원본(폐업·휴업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가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앞 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가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폐업·휴업만 해당합니다)”를 “원본(폐업·휴업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제11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받은 인증서에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되돌려 주어야”를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제12조(「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서 원본 및 기재 사

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훼손된 지정서(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만 해당하며, 지정서를 전자 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3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의 변경신청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제14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 1부”를 “원본(전자 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 1부”를 “원본(전자 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 1부”를 “원본(전자 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제1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 첨부서류란 제7호다목 중 “원본 1부”를 “원본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
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
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산림보호원 지원 ☐ 신규고용 ☐ 재고용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컬러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 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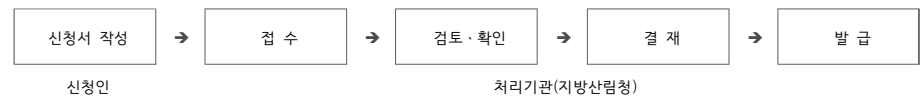
「산림보호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보호원이 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컬러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위촉 자격	1. [] 임업인
	2.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6.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
	7. []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이
제
기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15 -

[illegible]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7 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 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 본	2. ----- ----- ----- ----- ----- ----- 원 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 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 ----- ----- ----- ----- ----- ----- ----- ----- ----- -----.
1. 지정서 원본	1.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 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① ~ ④ (생략)	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1. ----- 원본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고용 방법 등) ① 삭제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고용 방법 등)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 ----- ----- ----- ----- . <후단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운영 등) ① ----- ----- ----- ----- ----- ----- ----- -----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u>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u>	--. ----- ----- ----- -----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① ----- ----- ----- -----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신고) ① ----- ----- ----- ----- ----- ----- -----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하여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
3. <u>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u>	3. ----- <u>원</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u>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하</u>	<u>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다)</u>	<u>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u>	3. 연구기관 등록증 <u>원본</u>	3. ----- <u>원본(전자문</u>
	<u>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자문서를 말한다)</u>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폐업신고) ① -----	고) 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	고) ① -----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	41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법	-----	개설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	-----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	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
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에	-----
별지 제20호서식의 연구기관 변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경신고서에 연구기관 등록증 <u>원</u>	----- <u>원</u>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
<u>본</u>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	<u>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u>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u>제외한다)</u> -----	하여야 한다.	-----.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	-----	1.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1. -----
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u>원본</u>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u>
다.	-----		<u>우는 제외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아연구기관은 법 제29조제	③ -----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
3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 별	-----	폐업 신고) 인체유래물은행이	폐업 신고) -----
지 제22호서식의 연구기관 폐업	-----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휴업하	-----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

제40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 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3.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 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 고) ① 유전자치료기관은 제43 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 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 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 고) ① ----- ----- ----- ----- ----- ----- ----- ----- -----.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1.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 고)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영 제1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 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 고) ① ----- ----- ----- ----- ----- ----- ----- -----.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1.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 폐업 신고) ① 유전자검사기관 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휴업 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 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 폐업 신고)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선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 ----- ----- ----- ----- ----- -----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 ----- ----- -----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 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 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 ----- ----- ----- ----- ----- -----.
1. <u>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 본</u>	<u><삭 제></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 경 확인) ① (생략)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 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 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 경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하여야 한다.	-----.
1. <u>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원본</u>	<u><삭 제></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u>원본</u>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조(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 ① ----- ----- ----- ----- ----- ----- ----- ----- ----- ----- ----- ----- 1. ----- <u>원본(전 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세포처리시설의 폐업·휴 업 등)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장이 폐업 ·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 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포처리시설 폐업·휴	제7조(세포처리시설의 폐업·휴 업 등) ----- ----- ----- ----- -----

업·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
1.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원본 (폐업·휴업만 해당한다)	1. ----- -----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① 법 제15조제6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장이 그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갱신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① ----- ----- ----- ----- ----- ----- ----- -----.
1.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원본	1.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15조(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품목허가의 변경만 해당한다)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1.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갱신 신청서(전자문서	제16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① ----- ----- ----- ----- ----- ----- ----- -----.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u>원본</u>	1. ----- -----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제조관리자 배치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조관리자의 배치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조관리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제조관리자 배치신고) ① ----- ----- ----- ----- ----- ----- ----- ----- -----.
1.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u>원본</u>	1. -----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① ~ ③ (생 략)	제22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 수입업 신고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 ----- ----- ----- ----- ----- ----- ----- -----.
1.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증 <u>원본</u>	1. -----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① ~ ④ (생 략)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⑤ -----

수입자가 수입품목허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허가를 했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수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 ----- ----- ----- ----- ----- ----- ----- ----- -----
1. 수입품목허가증 <u>원본</u>	1.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체세포등 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제28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변경허가) ① ----- ----- ----- ----- ----- ----- ----- ----- ----- ----- -----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u>원본</u>	1.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폐업·휴업 등)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라 한다)가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체세포등 관리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폐업·휴업 등) ----- ----- ----- ----- ----- ----- ----- ----- ----- ----- -----
1.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u>원본(폐업·휴업만 해당한다)</u>	1. ----- <u>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제30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생략)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1. ----- ----- ----- 해당하며, 전자 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 -----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생략)	제66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재·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	2. -----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 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 ③ (생략)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생략)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	④ -----

[illegibl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 신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 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 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 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략) 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 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③ (생략)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원본(전자 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 ----- ----- ----- ----- ----- -----.

1.·2. (생략)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4. 삭제 5.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 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 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1.·2. (생략)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 본 4.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 -----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원 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 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